

GAAP : 기업회계기준 브리핑

2025년 재무제표에 대한 중점심사 회계이슈 사전예고 (금융감독원)

- 금융감독원은 회사·감사인이 재무제표 작성·외부감사 수행 시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다음 해에 중점 심사할 회계이슈를 매년 6월에 사전 공표
- 2025년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시 중점 점검할 4 가지 회계이슈는
① 투자자 약정 회계처리, ② 전환사채 발행 및 투자 회계처리, ③ 공급자금융약정 공시,
④ 종속·관계기업 투자주식에 대한 손상처리

[2025년 재무제표에 대한 중점심사 회계이슈]

투자자 약정	주주·채권자 등의 투자계약시 다양한 약정이 부가되는 경우, 기업의 의무가 있다면 금융부채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확인하고, 관련 내용을 주석에 충실히 기재
전환사채 발행 및 투자	전환사채와 관련하여 콜/풋옵션이 부여된 경우 파생상품 회계처리에 유의하고, 특수관계자 거래, 담보제공 등 주석 공시를 철저히 수행
공급자금융약정 공시 (유통업, 제조업)	다수의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구매하는 기업이 공급자금융 약정을 이용하는 경우 동 약정을 이용하는 경우 동 약정의 조건, 관련 장부금액 등을 주석에 상세히 기재
종속·관계기업 투자주식 손상	당기순손실 지속 발생 등 실적이 악화된 종속·관계기업에 대해 합리적인 가정에 근거한 회수가능액을 산정하는 등 손상검토를 충실히 수행

1. 투자자 약정 회계처리

(선정배경) 주주나 채권자가 투자 결정시, 계약에 여러 약정사항을 부가하는 경우가 많으며, 이러한 투자자 약정 내용이 점점 복잡·다양해지는 추세

- 투자자는 투자수익을 확보하거나 리스크를 관리하고, 기업은 투자를 유치하는 한편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, 투자자와 기업 간 또는 투자자 간 다양한 유형의 약정을 체결
- (주주)기업이 투자유치를 위해 상환전환우선주 및 전환우선주*(이하 '전환주식')를 발행하면서 주주에게 조기상환청구권(풋옵션)을 부여하거나,
* 상환전환우선주는 만기시 투자금 상환을 요구하거나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고 전환우선주는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우선주로, 특히 사업 초기 기업 등 투자에 자주 활용
- 상장을 전제로 자금을 유치하는 경우, 상장 실패 등 조건 미충족시 주주에게 자금회수 기회를 제공(이하 '출구전략')

- (채권자) 기업이 사전에 정한 **재무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차입금의 기한이익을 상실할 수 있는 조항** 등(이하 '차입약정')을 부가

(유의사항) 계약상 의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부분은 **금융부채**로 분류하고 주석 공시 요구사항을 충실히 **기재**

- ① 전환주식에 대하여 옵션이 부여된 경우 회사에게 관련 의무가 존재하는지 살펴보고 이를 **금융부채**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검토할 필요
- 또한 옵션이 정보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**중요한 약정사항**이라면 주석에 공시
- ② 투자자 출구전략은 불확실한 미래 사건의 발생 여부에 따라 투자자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는 거래(**조건부 결제조항**)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관련 계약상 의무를 **금융부채**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점검할 필요
- ③ 차입약정이 있는 **채무증권이 비유동**으로 분류되거나, 약정을 위반하여 조기 상환될 수 있는 경우에는 주석에 관련 장부금액 등 **정보를 공시**

회계위반 예시

- ① [금융부채 미인식] A 사의 종속기업은 기업공개(이하 'IPO')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전환우선주를 발행하였고, IPO 실패시 인수인의 투자수익을 보장하기 위해 인수인이 회사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전환우선주 풋옵션을 부여
연결실체 관점에서 풋옵션 행사시 전환우선주 보유자가 연결실체에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동 전환우선주는 자본이 아닌 금융부채에 해당하나, A 사는 연결재무제표에 이를 자본(비지배지분)으로 계상
- ② [풋옵션 주석 누락] B 사는 종속기업이 발행한 전환우선주를 인수한 C 사와 주주간 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 등 위반시 B 사에 전환우선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조건부 풋옵션을 부여하였으나 동 사실을 주석에서 누락
- ③ [약정 위반 주석 누락] C 사가 x1년 발행한 회사채에는 부채비율 500% 이하 등 재무비율을 유지하도록 하는 특약이 설정되어 있으나, x3년 C 사의 부채비율이 500%를 초과하게 되어 기한이익이 상실될 수 있음에도 x3년 재무제표 주석에 관련 내용을 미기재

2. 전환사채 발행 및 투자 회계처리

(선정배경) 불공정거래 세력이 상장사의 전환사채를 이용하여 부당이득을 취하는 과정에서 회계처리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*

* 「사모 CB·BW 를 통한 허위 자금조달 및 허위 사업계획으로 주가 부양 후 부당이득을 취한 조직적 불공정거래 세력 적발·조치(‘25.3.10. 금융위·금융감원 보도자료)」

■ 전환사채 관련 사항이 발행 및 투자 기업의 재무제표에 충실히 표현되어 정보이용자에게 제공될 필요

(유의사항) 전환사채 관련 콜, 풋옵션 등의 주계약과 분리 여부 판단, 유동·비유동 분류, 충실한 주석 공시 등 기업회계기준을 준수

- ① 전환사채에 포함된 콜, 풋옵션 등이 있는 경우, 주계약과 분리하여야 하는지 판단하고, 분리요건 충족 시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
- ② 만기와 관계없이 발행조건 등에 따라 회계연도말 현재 12 개월 이상 상환을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유동부채로 분류
- ③ 특수관계자와의 전환사채 거래 또는 전환사채와 관련하여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등 주석 공시사항을 빠짐없이 기재

회계위반 예시

- ① [파생상품 미분리] D 사가 발행한 전환사채에 포함된 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(풋옵션)은 주계약과의 분리요건을 충족하므로 별도의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하여 기말에 관련 평가손익을 인식하여야 하나, D 사는 이를 분리하여 회계처리하지 않음
- ② [유동·비유동 분류 위반] E 사가 x1.7.1.에 발행한 전환사채에는 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(x2.7.1.부터 행사 가능)이 있어, E 사는 x1 년말 시점에 12 개월 이상 전환사채의 상환을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못하므로 이를 유동부채로 분류하여야 했으나, 만기(3 년)만 고려하여 비유동부채로 잘못 분류
- ③ [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누락] F 사는 관계기업인 G 사가 발행한 제 y 회 전환사채를 전액 인수하여 당기손익-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데도 이를 특수관계자 거래내역에 미기재
- ④ [담보제공 사실 주석 누락] H 사는 무보증 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, 전환사채 인수자가 저축은행으로부터 인수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예금, 주식 등을 담보로 제공하였음에도 이를 재무제표 주석에 미기재

3. 공급자금융약정 공시

(선정배경) 개정 기업회계기준*은 '24 회계연도부터 **공급자금융약정이 기업의 재무에 미치는 영향을 상세하게 기재·공시하도록 요구**

* '23.10 월 K-IFRS 제 1007 호(현금흐름표), 제 1107 호(금융상품: 공시) 개정

- 공급자금융약정은 패토링*과 달리 금융약정에 구매기업의 관여도가 높은 점이 특징이며, 역팩토링, 공급망금융, 매입채무금융 등으로 통용**

* 공급자가 매출채권을 담보로 자금을 빌리거나 매출채권을 매각하여 자금을 조달

공급자금융약정이란?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(개념) 다수의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구매하는 기업이 거래대금 융통을 위한 금융약정의 당사자가 되는 등 높은 수준으로 관여하는 경우를 의미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□ 이러한 금융약정은 금융회사가 공급자에게 우선 대금을 지급(공급자의 조기 대금회수)하고 나중에 구매자로부터 대금을 회수(구매기업의 대금 지급기한 연장) (효과) 구매기업의 우량한 신용을 활용하여 공급자는 유리한 조건으로 매출채권을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고, 구매기업은 채무 상환 업무를 금융기관에 일임하여 운영비용을 절감 <p>(사례) 다음 약정들은 공급자금융약정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음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) 은행기한부신용장 (Banker's Usance) 공급자가 발행한 환어음을 은행이 할인 매입하고, <u>은행은 환어음 만기시점에 구매기업으로부터 대금 회수</u> 2) 구매전용카드 구매기업이 구매대금에 대한 카드거래승인을 받으면, 카드사가 공급자에게 먼저 대금을 지급한 후, 구매기업이 만기일에 카드대금을 상환하며, 약속어음과 같이 <u>구매기업이 만기일을 지정</u> 3) 구매자금대출 공급자가 구매기업을 지급인으로 하는 환어음을 발행한 후, 은행에 추심하여 물품대금을 받고, <u>구매기업 명의의 대출금으로 지급제시된 환어음 대금을 결제</u> 4)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<u>구매기업의 신용과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</u> 공급자 명의의 대출 취급, 외상매출채권 만기일에 구매자의 결제대금으로 대출금 상환 5) 구매론 구매기업이 물품을 제공받고 <u>은행에 결제내역을 전송하면</u> 은행이 승인한 내역에 대해 지급을 보장하고, 필요시 공급자는 만기일 이전에 할인하여 지급받을 수 있음 6) 상생결제시스템 대기업의 1차 협력사가 2·3 차 협력사에 지급하는 물품대금을 <u>구매기업(대기업)의 신용도를 활용하여 낮은 금융비용으로 결제대금 조기 현금화 가능</u>

(유의사항) 공급자금융약정(이하 '약정') 관련 주석 공시 요구사항을 충실히 기재

① 현금흐름표와 관련하여 다음의 내용을 통합하여 공시

- 약정의 조건(예: 연장지급 조건, 제공된 담보나 보증)
- 기초·기말의 약정 관련 금융부채 장부금액 및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항목, 약정 관련 금융부채와 약정 외 매입채무의 지급기일 범위 비교 등

② 금융상품의 유동성위험과 관련하여 공급자금융약정에 따른 한도약정 사용에 관한 사항

4. 종속·관계기업 투자주식에 대한 손상처리

(선정배경) 기업의 실적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종속·관계기업 투자주식에 대한 손상차손 발생 가능성 증가

- 종속·관계기업의 손상징후가 존재함에도 손상검토를 수행하지 않거나 합리적 근거 없이 검토하여 손실을 과소계상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

(유의사항) 매 보고기간 말 종속·관계·공동기업 투자주식에 대해 손상징후를 검토하고, 징후가 있다면 합리적인 가정에 근거하여 손상평가 수행

① 내·외부 정보*를 종합하여 손상징후를 살피고, 징후가 있다면 회수가능액을 추정하여 장부금액이 초과하는 부분은 손상차손 인식

- * 내부: 자산의 경제적 성과가 예상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내부보고 등
- 외부: 기업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유의적 변화(업황 등)가 예상되는 경우 등

② 회수가능액은 평가기법 및 투입변수(할인율, 매출성장률, 원가율 등) 등에 대한 충분한 근거와 합리적 가정을 바탕으로 추정

회계위반 예시
① [회수가능액 과대 산정] I사는 J 사 주식(종속기업투자주식)에 대하여 x1년만 기준으로 회수가능액을 산정하면서, J 사의 부실 재고자산이 x2년 중 모두 외부로 판매될 것으로 가정하는 등 실현 불가능하고 비정상적인 가정을 기초로 하여 회수가능액을 과대 산정하고 J 사 주식에 대한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음
② [손상징후 판단 오류] K 사는 종속기업인 L 사의 재무상황 악화로 L 사에 대한 대여금을 출자전환하고 추가 자금지원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L 사의 청산을 결의하였을 뿐만 아니라, L 사는 사실상 매출이 전무하였는데도 불구하고, 종속기업투자주식의 손상징후가 없다고 판단하고 회수가능액에 대한 합리적 추정 없이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음
③ [손상징후 판단 오류] M 사는 공동기업인 N 사의 대외 영업환경이 급격히 악화되어 당기순손실 증가, 완전자본잠식 등 손상징후가 발생하여 연결재무제표 상 지분법손실을 인식하고 공동기업투자주식 전액을 감액하였으나, 원가법을 적용하는 별도재무제표에서는 N 사가 진행하고 있는 외부 투자자금 유치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손상검토를 미수행